

의안번호	제244호
의결 연월일	2011년 11월 일 (제305회)

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출 자	충 청 북 도 지 사
제출연월일	2011년 11월 9일

법무통계담당관 심사를 마칩

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44
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2011년 11월 9일
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1. 제안이유

- 여성정책관, 복지분야 기능 강화, 도정 분야별 현안추진을 위한 팀 신설, 명칭변경과 업무분장 조정 등 효율적인 조직으로 재정비하기 위함

2. 주요내용

《 기구조정 》 1실 6국 1단 1본부 → 변동 없음

- 명칭변경 (안 제5조)
 - 정책관리실 → 기획조정실
 - 문화여성환경국 → 문화관광환경국
- 이관조정 : 문화여성환경국 여성정책과 → 여성정책관
 - 기타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함

《 실·국 분장사무 조정 》

- 신설(경제통상국) : 경제분야 수도권 규제완화에 관한 사항 (안 제9조)
- 일부삭제(문화여성환경국) (안 제11조)
 - 여성기획, 권익증진, 가족지원, 다문화, 청소년에 관한사항

《 사업소 분장사무 조정 》

- 신설(여성발전센터) : 성별영향분석평가 업무에 관한 사항 (안 제52조)

3. 의안전문 : 붙임

4. 신·구조문대비표 : 붙임

5. 관계법령 : 붙임

6. 비용추계서 : 해당없음

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 중 “정책관리실”을 “기획조정실”로 “문화여성환경국”을 “문화관광환경국”으로 한다.

제6조의 제목 “(정책관리실)”을 “(기획조정실)”로 하고, 본문 중 “정책관리실장”을 “기획조정실장”으로 한다.

제9조제7호부터 제18호까지를 각각 제8호부터 제19호까지로 하고,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.

7. 경제분야 수도권 규제완화에 관한 사항

제11조의 제목 “(문화여성환경국)”을 “(문화관광환경국)”으로 하고, 본문 중 “문화여성환경국장”을 “문화관광환경국장”으로 하며, 제5호부터 제8호까지를 삭제하고, 제9호부터 제19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15호까지로 한다.

제52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6. 성별영향분석평가 업무에 관한 사항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부서 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 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.

제3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 충청북도의회 위원회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

제3조제2항제2호 정책복지위원회 가목 “정책관리실”을 “기획조정실”로 하고, 같은항 제3호 행정문화위원회 가목 “공보관실”을 “공보관”으로 하며, 다음에 “여성정책관”을 신설하고 “문화여성환경국”을 “문화관광환경국”으로 한다.

② 충청북도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.

제5조제3항 중 “정책관리실장”을 “기획조정실장 ”으로 하고 “문화여성환경국장”을 “문화관광환경국장”으로 한다.

③ 충청북도교육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3항 중 “정책관리실장”을 “기획조정실장”으로 한다.

④ 충청북도 도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항 중 “정책관리실장”을 “기획조정실장”으로 하고, 같은조 제3항 중 “기획관”을 “정책기획관”으로 한다.

제6조제2항 중 “정책관리실”을 “기획조정실”로 한다.

⑤ 충청북도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2항 중 “정책관리실장”을 “기획조정실장”으로 한다.

⑥ 충청북도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 중 “정책관리실장”을 “기획조정실장”으로 한다.

⑦ 충청북도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2항 중 “정책관리실장”을 “기획조정실장”으로 한다.

⑧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 중 “정책관리실장”을 “기획조정실장”으로 한다.

⑨ 충청북도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2항 중 “정책관리실장”을 “기획조정실장”으로 한다.

⑩ 충청북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1호 중 “정책관리실장”을 “기획조정실장”으로 한다.

⑪ 충청북도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3항제2호 중 “정책관리실장”을 “기획조정실장”으로 한다.

제7조제1항 중 “정책관리실장”을 “기획조정실장”으로 한다.

⑫ 충청북도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3항 중 “정책관리실장”을 “기획조정실장”으로 한다.

⑬ 충청북도 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2항 중 “정책관리실장”을 “기획조정실장”으로 하고, “문화여성환경국장”을 “문화관광환경국장”으로 한다.

⑭ 충청북도 외국인주민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3항제1호 중 “문화여성환경국장”을 “여성정책관”으로 한다.

⑮ 충청북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제3항제1호 중 “문화여성환경국장”을 “문화관광환경국장”으로 한다.

⑯ 충청북도노인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3항 및 제8조 중 “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”을 “복지정책과장”으로 한다.

⑰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.

제4조제2항제1호 중 “정책관리실장”을 “기획조정실장”으로 하고, “문화여성환경국장”을 “문화관광환경국장”으로 한다.

⑱ 충청북도지편찬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항 중 “정책관리실장”을 “기획조정실장”으로 한다.

⑲ 충청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3항 및 제15조 중 “문화여성환경국장”을 “문화관광환경국장”으로 한다.

- ⑳ 충청북도립교향악단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2조제1항 및 제11조제3항 중 “문화여성환경국장”을 “문화관광환경국장”으로 한다.
- ㉑ 충청북도 여성정책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25조제3항 단서 및 제37조제1항 중 “문화여성환경국장”을 각각 “여성정책관”으로 한다.
- ㉒ 충청북도지방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9조제2항 중 “문화여성환경국장”을 “여성정책관”으로 한다.
- ㉓ 충청북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9조제2항 중 “문화여성환경국장”을 “여성정책관”으로 한다.
- ㉔ 충청북도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9조제2항 중 “문화여성환경국장”을 “문화관광환경국장”으로 하고,
제11조 중 “관광진흥과장”을 “관광항공과장”으로 한다
- ㉕ 충청북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3조제3항제1호 중 “문화여성환경국장”을 “문화관광환경국장”으로 한다.
- ㉖ 충청북도 환경분쟁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2조제1항 중 “문화여성환경국장”을 “문화관광환경국장”으로 한다.
- ㉗ 충청북도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3조제3항 중 “문화여성환경국장”을 “문화관광환경국장”으로 한다.
- ㉘ 충청북도청풍명월21실천협의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3조제2항제1호 중 “문화여성환경국장”을 “문화관광환경국장”으로 한다.

㉔ 충청북도 도시계획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8조제2항 중 “정책관리실장”을 “기획조정실장 ”으로 한다.

㉕ 충청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4조제2항제2호 중 “정책관리실장”을 “기획조정실장 ”으로 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제5조(실·국·단·본부의 설치) 도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<u>정책관리실, 행정국, 보건복지국, 경제통상국, 농정국, 문화여성환경국, 균형건설국, 바이오밸리추진단 및 소방본부</u> 를 둔다.</p>	<p>제5조(실·국·단·본부의 설치) 도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<u>기획조정실, 행정국, 보건복지국, 경제통상국, 농정국, 문화관광환경국, 균형건설국, 바이오밸리추진단 및 소방본부</u>를 둔다.</p>
<p>제6조(정책관리실) <u>정책관리실장</u>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 1. ~ 14. (생략)</p>	<p>제6조(기획조정실) <u>기획조정실장</u>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 1. ~ 14.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9조(경제통상국) <u>경제통상국장</u>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 1. ~ 6. (생략) <u><신설></u> 7. ~ 18. (생략)</p>	<p>제9조(경제통상국) <u>경제통상국장</u>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 1. ~ 6. (현행과 같음) <u>7. 경제분야 수도권 규제완화에 관한 사항</u> 8. ~ 19.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11조(문화여성환경국) <u>문화여성환경국장</u>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 1.~4. (생략) <u>5. 청소년 복지에 관한 종합기획 및 조정</u> <u>6. 여성복지 정책 및 여성권의 증진에 관한 사항</u> <u>7. 건강가정 육성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</u> <u>8. 결혼중개업 관리에 관한 사항</u> 9.~19.(생략)</p>	<p>제12조(문화관광환경국) <u>문화관광환경국장</u>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 1. ~ 4. (현행과 같음) 5. <삭 제> 6. <삭 제> 7. <삭 제> 8. <삭 제> 5.~15.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52조(소관사무) <u>여성발전센터소장</u>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. 1. ~ 5. (생략) <u><신설></u></p>	<p>제52조(소관사무) <u>여성발전센터소장</u>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. 1. ~ 5. (현행과 같음) <u>6. 성별영향분석평가 업무에 관한 사항</u></p>

관계법령 발취

【지방자치법】

제112조 (행정기구와 공무원)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

③ ~ ⑥ (생략)

【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】

제9조 (시·도의 기구설치기준) ① 시·도 본청에 두는 실·국·본부의 설치와 그 분장사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, 실·국·본부의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실·국·본부의 개편, 명칭변경과 사무분장을 할 때 중앙행정조직과 지방행정조직간의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.